

제6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다행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제62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주식총수의 1%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전자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9년 3월 22일(금) 오전 9시

2. 장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59(고잔동) 한일철강(주) 코일센터 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62기(2018.1.1~2018.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별첨참조)
※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정관 변경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별첨참조)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상근감사)(별첨참조)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일부 개정의 건(별첨참조)
※ 임원 퇴직금 지급율 개정 반영

제8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주주제안 사항)(별첨참조)
※ 주주제안 사항으로 1주당 액면가액을 500원으로 액면분할 제안

제9호 의안 : 배당금 지급의 건(주주제안 사항)
※ 주주제안 사항으로 1주당 1,000원의 배당 제안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19년 3월 12일~2019년 3월 21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은행 개인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6.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증권회사에 예약하지 않은 전자등록전환 대상 주식 등 실물 증권은 제도 시행일에 효력이 상실되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증권회사에 예약하십시오. 보유 중인 실물증권의 전자등록전환 대상 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www.ksd.or.kr → 전자증권제도 → 제도 시행일의 전환 → 전환 대상 종목)

7. 기타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9년 3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7길 28(충무로3가)



한 일 철 강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엄 정 현

(직인생략)

[별첨]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p><u>제8조(주권의 종류)</u>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팔종으로 한다.</p>	<p><u>제8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u>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p>	<p>-상장회사의 경우 발행하는 모든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에 대한 전자등록이 사실상 의무화됨에 따라 주권의 종류 삭제 및 관련 근거를 신설</p>
<p><u>제11조(명의개서대리인)</u> ①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의 결의로 정한다. ③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부분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u>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u>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p>	<p><u>제11조(명의개서대리인)</u> ① <좌 동> ② <좌 동> ③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부분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u>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u> ④ <좌 동></p>	<p>-주식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p>
<p><u>제12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u> ①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제11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p>	<p><u>제12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삭 제></u></p>	<p>-주식이 전자등록될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주주 등의 제반정보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관련 내용 삭제</p>
<p><u>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u> ①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p>	<p><u>제12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u> ① <좌 동> ② <좌 동></p>	<p>-재무제표 확정권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의 설정을 달리 할 수 있도록 선택사항 표시 신설 -기간을 의미하는 경우 개월로 표현을 수정 -제12조 삭제에 따른 조항 번호 변경</p>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p>③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③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p>	
<p>제14조(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p>	<p>제13조(사채의 발행) ① <좌 동> ② <좌 동></p>	<p>-제12조 삭제에 따른 조항 번호 변경</p>
<p><신 설></p>	<p>제14조(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p>	<p>-상장회사의 경우 발행하는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에 대하여 사실상 전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근거 신설</p>
<p>제16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p>	<p>제16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p>	<p>-제12조 삭제에 따른 문구 정비</p>
<p>제17조(소집시기) ①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p>	<p>제17조(소집시기) ① <좌 동>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p>	<p>-기간을 의미하는 경우 개월로 표현을 수정</p>
<p>제29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신 설></p>	<p>제29조(이사의 수) ①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p>	<p>-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으로 인한 결원시 상법상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문구 조정</p>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p>제48조의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u>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u> 규정에 의한 <u>감사인선임 위원회의 승인을</u>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u>사업년도</u>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u>최근</u>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p>	<p>제48조의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u>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u> 규정에 의한 <u>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u> 받아 <u>감사가</u>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u>이후</u>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u>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u>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p>	<p>-개정 외부감사법 제10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선정권 변경 내용을 반영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수시로 개정할 필요가 없도록 조문 정리</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1조 및 제14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전자증권법 시행일이 2019년 9월로 예정됨에 따라 관련 정관규정의 시행시기를 별도로 규정하는 단서 신설</p>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사내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주 요 약 력	추천인	최대주주 와의 관계	회사와의 거래내역
사내이사 후보 (재선임)	엄 정 현 (1948.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 한일철강(주) 전무이사 - (주)하이스틸 이사(現) - 한일철강(주) 대표이사(現) 	이사회	본인	없음

□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상근감사)

<상근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주 요 약 력	추천인	최대주주 와의 관계	회사와의 거래내역
상근감사 후보 (재선임)	송 광 울 (1964.9.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강대학교 졸업 - 현대종합상사 경영지원본부장 - 중국 청도현대조선 관리부총경리 	이사회	없음	없음

□ 제7호 의안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일부 개정의 건
(개정전)

구 분	지 급 액
회장 및 사장	1년에 대하여 월보수의 2개월분
이사	1년에 대하여 월보수의 1.5개월분

(개정후)

구 분	지 급 액
회장 및 사장 (대표이사)	1년에 대하여 월보수의 3개월분
이사	1년에 대하여 월보수의 2개월분

□ 제8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액면분할)(주주제안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6,000,000주로 한다.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60,000,000주로 한다.	- 주주제안 사항(액면분할 제안)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 주주제안 사항(액면분할 제안)